

<별표>

등록금 반환(이월)기준 <개정 2011. 5. 26.>

1.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[단, 신입생(첫 학기만 해당)은 이월] .
2.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, 수업료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[단, 신입생(첫 학기만 해당)은 이월] .
3.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한 후 자퇴할 경우 신입생은 자퇴일자로, 재학생은 휴학일 기준으로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.
4. 반환(이월)금 계산 시 1,000원 미만은 절사한다.

사유 발생일	반환(이월)금액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	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	수업료의 5/6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	수업료의 2/3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	수업료의 1/2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	반환(이월)하지 아니함